

번호: PO-MA-008					
제 목	의사단체의 자율규제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Promotion of Self-regulation System of Medical Organizations in Korea				
저자 및 소속	김영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Kim, Young Hwa Department of Medical Law and Bioethic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분야	의료관리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보장]	발표자		발표형식	포스터
<p>목적: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수많은 공인된 자격을 갖는 전문가들이 양성되고, 이들의 구심점인 전문가단체는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수많은 협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전문직은 협회나 단체 같은 자율적 기구를 결성하여 전문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윤리강령의 제정 및 이에 대한 준수의무를 각 회원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윤리강령이 미실천이나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설치를 통해 구성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여 전문직 단체로서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전문가집단이라고 평가받는 의사단체에 경우 자율징계권이 행정부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여 형식적인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전문직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율성이거나 윤리강령이 보다 구체화되어 구현되기에에는 역부적인 상황이라 하겠다. 의료직종은 타직종과 달리 생명신체를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엄격한 전문가적 윤리를 필요로 한다. 또한 업무상의 특수성, 즉 고도의 전문성 및 재량성으로 인해 이들 이외 사람들은 이들의 업무내용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윤리적이고 정도를 벗어난 의료행위인지의 엄격한 판단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 이런한 측면에서 볼 때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의 판단, 의료윤리의 위배 등과 경미한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부 권한이양과 같은 회원 자율지도의 행정권한 위임과 더불어 의사단체 중앙회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전문분야인 의료윤리나 의료기술에 대한 판단이 전문가집단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 자율정화 기능이 강화되고 정부의 업무도 인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모든 규제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것아 아니라, 2차 감독기관의로서의 역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의 목적은 의사단체의 자율적인 내부정화를 통해 윤리의식을 회복, 증진하고, 전문가집단으로써 국민과 사회의 신뢰를 획득하고 국민의 건강권 신장과 국가의 효율적인 보건정책 수립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율규제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p>					
<p>방법: 본 연구에서의 의사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 한정시킬 것이며, 먼저 전문직과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는 사회학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검토해 본 후,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자료집을 통해 자율규제현황을 살펴보고, 의료법과 협회정관 및 윤리지침을 근거로 의사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율규제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외국 의사단체 및 우리나라 타전문가집단의 사례를 비교, 분석을 통해 고찰해 봄으로써 현 의료계의 특성이 고려된 의사단체의 자율규제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p>					
<p>결과: 의사협회 정관규정에 세부적인 징계규정들은 법적인 힘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단체는 전문가단체로서 최고의 위상을 주는 듯하나 실질적인 의료인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인 권한이 미약하여 의사단체가 의료인 단체로서의 위상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임을 살펴볼 수 있다. 외국의 의사단체를 살펴보면,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 선진국 경우 의사단체에 대한 자율권을 대폭 부여, 자율규제체계로 진행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변호사단체의 경우 변호사법의 근거 하에 변호사 단체의 권한과 징계권이 확보되어 있어 변호사협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위상이 확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p>					
<p>결론: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료인 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확보하고, 더불어 단체 스스로 자율적인 정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자율규제제도를 도입. 활성화하여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궁극에는 의료윤리를 증진하여 나아가 국민의 보건향상과 국가의 효율적인 보건정책 수립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p>					